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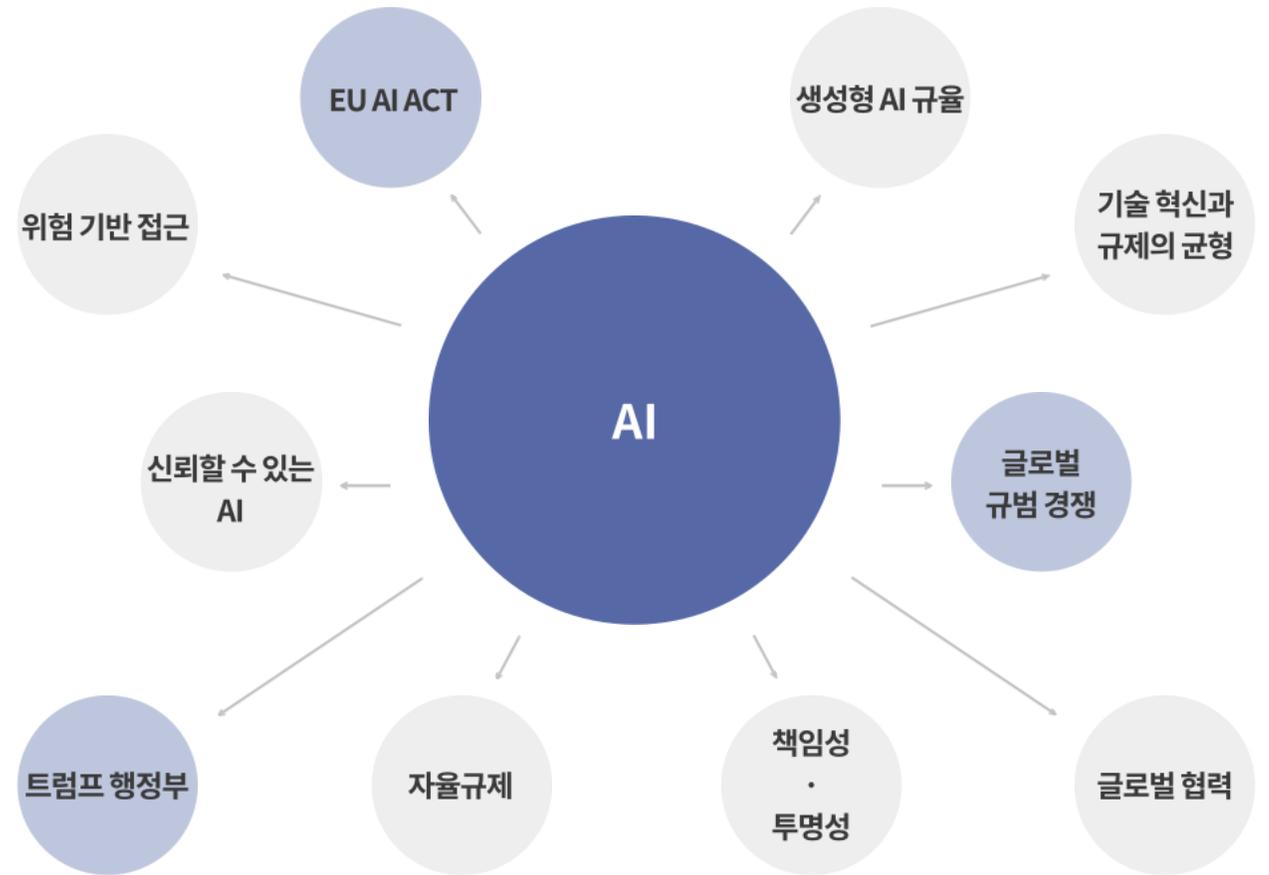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하위법령안

윤리제도분과장

송도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비트)

doyoung.song@veat.kr

AI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



미국의 최근 입장

- 2025년 2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강조됨
-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AI 안전 규제 보다는 'AI의 기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이러한 기조 아래, 미국은 시장 주도형 혁신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규제보다는 **투자**와 **기술 발전에 무게**를 두고 있음. 대표적으로 'Stargate 프로젝트'를 통해 AI 인프라 구축 및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 다만, 안전성 평가나 책임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채 범용 AI 모델이 빠르게 확산될 경우, **윤리적 문제나 국제 규제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EU의 최근 입장

- 한편, EU 역시 최근에는 **규제 완화 기조와 함께 AI 기업 유치 의지**를 내비치고 있음
-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유해한 AI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보호 지침 초안을 철회하며, 지나친 규제보다는 **균형 있는 접근**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또한 EU AI Act와 연계된 **범용 인공지능 운영준칙**(General-Purpose AI Code of Practice) 마련 작업이 2025년 초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임
 - **투명성 및 저작권 관련 의무**: 모든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적용
 - **고위험 시스템 평가 및 완화 조치**: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고급 모델에만 적용



주요 국가별 입법/정책 비교

구분	EU	미국	일본
규제 방향성	위험기반 규제 중심(AI Act) 적법성·윤리성·견고성 원칙	자율규제 중심, 시장 주도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EO 14110 폐기	정부 가이드라인 중심의 유연한 규제
최근 정책 동향	규제 완화 분위기 일부 감지 (AI 책임 관련 지침 폐기 등)	트럼프 정부 '기회 우선'에 따라 규제보다 혁신·투자 강조	민간 자율 주도 포괄적 규제 배제
중점 키워드	신뢰할 수 있는 AI, 책임성, 투명성	AI 기회, 자율규제, 투자 촉진	투명성, 국제조화, 민관협력 등
법제화 수준	강력한 입법(AI Act)	행정부 중심의 선언적 지침 연방법 미비·주별 진행	부처별 지침 위주
규범 성격	강제적 규제 (4단계 리스크 분류)	자율규제 중심	유연한 규제

주요 국가별 입법/정책 비교

구분	중국	영국	한국
규제 방향성	엄격한 규제·국가 주도	안전 중심 규제 전환	혁신 촉진과 안전 균형
최근 정책 동향	2025년 생성AI 서비스 강제 알고리즘 신고 의무화	2025년 1월 AI 기회 행동계획 발표	2026년 1월 AI 기본법 시행 예정
중점 키워드	알고리즘 규정 준수	프론티어 AI, AI Security Institute 전환	고위험 AI, 생성형 AI, 투명성, 신뢰성
법제화 수준	법제화 진행 중	법제화 예정	법제화 완료
규범 성격	강제적 규제 (다층적 프레임워크)	강제적 규제 도입 예정	강제적 규제와 자율적 인증 혼합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안 제정 경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경과

AI기본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 구성·운영

과기정통부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
법제처(미래법제혁신기획단)가
정비단 회의에 참여, 하위법령 제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주요 사항

AI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3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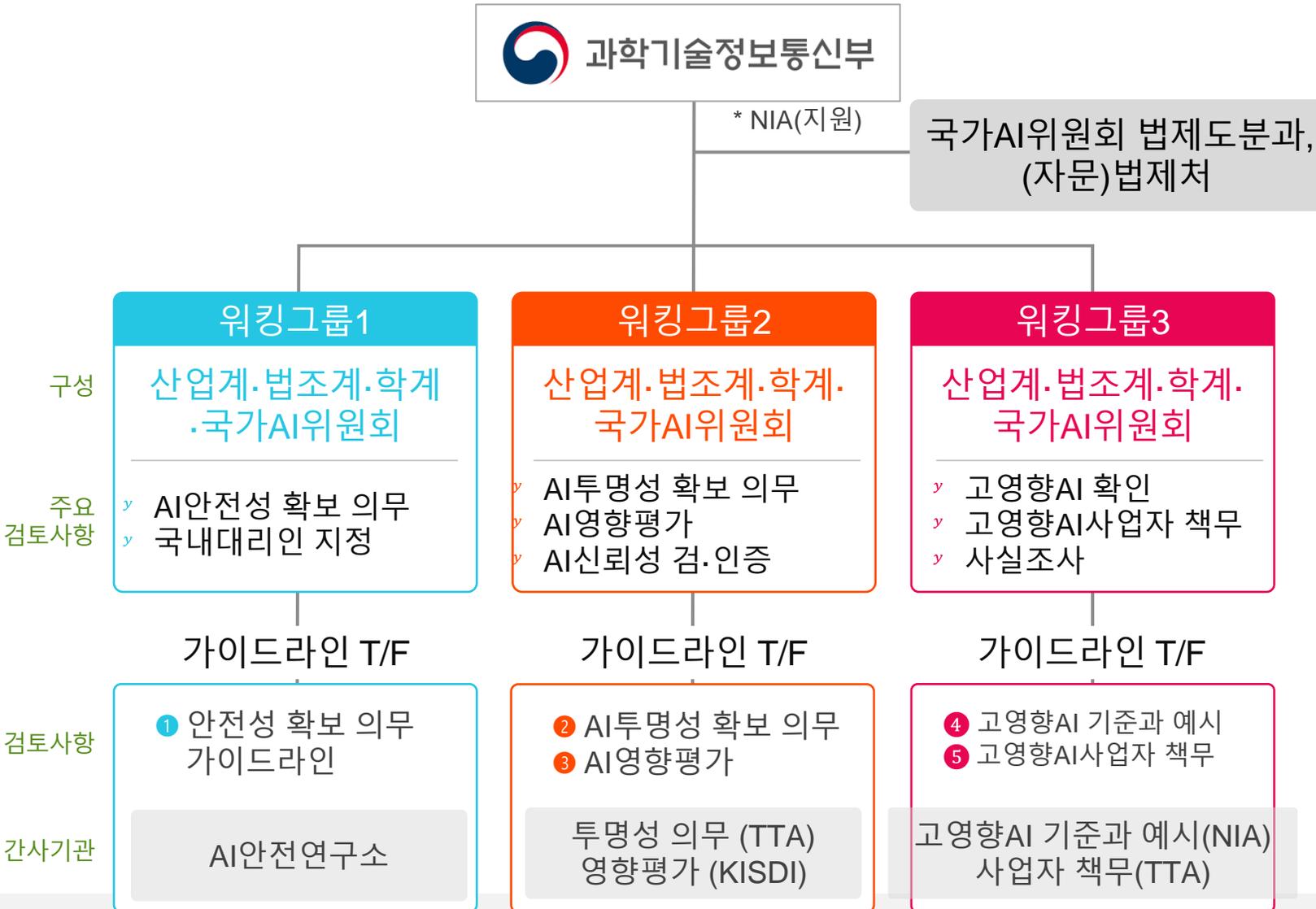
고영향 AI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제34조)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제32조)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제35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제31조)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경과



하위법령 마련과 병행하여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고시에 대한 별도 T/F (5개, 각 10여명의 민간전문가 참여)도 함께 운영

고영향AI 기준과 예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분야별 전문성이 특히 중요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로 초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

인공지능기본법 및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운영
 -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활용**
 -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9.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10.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분야별 고영향 인공지능

❖ **의료기기** : '현행 '의료기기법령'상 3등급 이상부터 잠재적 위해성이 중증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상 잠재적 위해성 판단 기준은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 판단에도 활용될 수 있음(의료기기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참조)

- 1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 2등급 :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 3등급 :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4등급 :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 채용/대출심사

- '채용'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 높음
- '대출심사' 및 이와 유사한 개인신용평가, 보험가입심사 등에 이용되는 인공지능 역시 고영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 (→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도 참고 필요.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① '고위험 서비스'라는 용어 사용, ② AI 시스템의 개발·운영 등을 외부기관에 위탁시 수탁기관이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

제2조(정의)

● 분야별 고영향 인공지능

- ❖ **교통수단** : 교통안전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는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
 -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시스템도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자율주행 레벨 3단계의 차량까지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가능성

< 운전 자동화의 단계적 구분 >

레벨 구분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운전자 보조 기능			자율주행 기능		
명칭	자율주행 없음 (No Automation)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자동화 항목	없음	방향조작 or 속도	방향조작 & 속도	방향조작 & 속도	방향조작 & 속도	방향조작 & 속도
운전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운전대 상시 잡고 있어야함)	시스템 요청시 (운전대 잡을 필요, 제어권 전환시만 필요)	작동구간 내 불필요 (제어권 전환)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전 구간
시장 현황	대부분 완성차 양산	대부분 완성차 양산	7~8개 완성차 양산	1~2개 완성차 양산	3~4개 벤처 생산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블로그

제4조(적용범위)

-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학습용데이터)

-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AI] 제30조(검인·증)

-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4. 검·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AI] 제30조(검·인증)

법 제30조(인공지능 안전성·신뢰성 검·인증등 지원) 관련 시행령안

- ❖ 위임사항 : (1) 검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제1항 제5호), (2) 중소기업등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제2항)
- ❖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검증·인증 활동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보급, 교육 및 컨설팅, 품질 진단 및 관리,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고영향 AI] 제31조(사전고지의무), 제33조(사전검토의무)

-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영향 AI]

일상성 평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빈도와 정도



특수성 평가

일상적이지 않은 활용과
영향의 정도

회복가능성 평가

개인과 사회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 여부

영향범위 평가

기본권, 생명, 신체, 권리,
이익에 미치는 영향 범위

[고영항 AI] 제34조(사업자의 책무)

- 제34조(고영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항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항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운영
4. 고영항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
5.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항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고영향 AI] 제34조(사업자의 책무)

법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관련 시행령안

- ❖ 위임사항 :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 근거 자료를 0년간 보관
 - 일부 사항(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제외)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
- ❖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제3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인공지능시스템을 제공받은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단, 인공지능시스템의 중대한 기능 변경을 초래한 경우에는 예외

[고영향 AI] 제35조(영향평가)

-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영향 AI] 제35조(영향평가)

법 제35조(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관련 시행령안

❖ 위임사항 :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

① 영향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 할 수 있음

- 영향받는자의 식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유형의 식별, 사회적/경제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고영향 인공지능의 사용 행태 등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영향평가 실시 가능

③ 과기정통부장관은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내용, 방법을 수립하여 보급 가능

[고성능 AI] 제32조(안전성 확보 의무)

-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성능 AI] 제32조(안전성 확보 의무)

법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시행령안

- ❖ 위임사항 : 고성능 인공지능의 기준이 되는 '누적 연산량'의 기준
 -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26}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 중 기술 발전 수준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규정
 - **고시 및 가이드라인**에서 글로벌 상호인정 확보 가능한 방향으로, 누적 연산량 계산, 수명주기 전반 위험의 식별/평가/완화,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 고시 : "인공지능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고시" 마련 중
 -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기준을 10^{26} 이상으로** 예정
 - 누적 연산량 계산 방법 및 기준
- ❖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에서 'AI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중

[고영향AI/생성형AI]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영향AI/생성형AI]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법 제31조 관련 시행령안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필요

- 제품등에 직접 기재, 계약서/사용설명서, 이용약관 등에 기재
- 화면 또는 단말기 등에 표시
- 제품등을 제공하는 장소(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장소 포함)에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 그 밖에 제품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결과물에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31조 제2항에 따른 표시 가능

③ 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고지나 표시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

- 이용자가 **시각, 청각 등을 통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주된 이용자의 연령, 신체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

제2조 제8호 :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제2조 제9호 :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

④ 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이 명백하거나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사용되는 등 제품등의 유형/특성이나 결과물의 내용, 이용형태 및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40조(사실조사)

-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증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